

계절학기 운영규정

2003. 06. 27. 최초제정 2025. 12. 15. 부분개정
 2012. 08. 01. 부분개정
 2013. 10. 01. 부분개정
 2016. 04. 01. 부분개정
 2021. 01. 01. 부분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2조제2항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설 및 공고) 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, 교과목 선정, 기간, 등록절차, 수강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 2주일 전에 공고한다.(2013.10.01.개정)

제3조(수강대상) 수강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전공(교양)필수교과 학점 미 취득자
2. 삭제
3. 정규교과를 이수하더라도 졸업학점이 부족한 자
4. 기 취득한 성적이 불량하여 재수강하고자 하는 자
5. 기타 학점취득 희망자

제4조(수업시간) 강의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,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학점을 인정한다.<개정 2025.12.15>

제5조(개설과목) 개설과목은 수강인원이 6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며, 그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강인원 미달 과목에 대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설할 수 있다.

제6조(이수과목) 해당학과 전공과목외 계열별로 개설과목을 지정 또는 신설하여 이수시킬 수 있으며, 그 과목은 개강 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(2013.10.01.개정)

제7조(수강신청 및 수강료납부) 수강신청은 1회에 9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,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개시 하루 전까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0.01., 2016.04.01., 2021.01.01.>

제8조(수강료 산출)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계열별로 책정하고 학점 단위로 징수한다.

제9조(성적평가) 계절학기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다.

1.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다만 성적사정 및 정정 등의 절차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간소화 할 수 있다.
2.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만으로 합산하고 해당학기의 평균성적에

산입하지 아니한다.

3.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성적은 학사경고, 장학생 선발과는 관계하지 아니 한다.

제10조(기타) 계절학기 운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정규학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. 08. 01일 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3조, 제5조, 제9조에 관한 사항은 2012학년도 하계방학 계절 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. 10. 01.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7조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